#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073 발의연월일 : 2022. 12. 22.

발 의 자:정희용·주호영·최춘식

정점식 • 구자근 • 이인선

박덕흠 • 양금희 • 안병길

김도읍 • 이철규 • 이양수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

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현행 「농촌진흥법」에 근거하여 농업기술의 보급·교육·훈련·현장기술지원 등의 농촌지도사업과 농 업환경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음.

그러나 농업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관련 정보 및 유용 데이터의 수집·관리·활용·공유체계가 미흡하여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농 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의 보급·확산체계는 다양화된 농업인 등의 기술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농업인 등의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·분석·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,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·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·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지속가능한 농업·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·관리·제 공 및 공동 활용하고,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 도록 함(안 제8조).
- 라.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·가공하여 농업인·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 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,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

농상담 및 기술지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 조).

- 마.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, 대학, 연구기관,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·확산 지원단을 구성·운영하고,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,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.
- 바.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(안 제14조).

##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·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 가 지속가능한 농업·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업인등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.
- 2. "지방농촌진흥기관"이란 「농촌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.
- 3. "농업과학기술정보"란 「농촌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 흥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·확산을 위 하여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와 그 외의 방식

- 으로 표현되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 보를 말한다.
- 가.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
  - 1) 농경지 토양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
  - 2) 쌀 품질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
  - 3)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
  - 4) 농작물 병해충 진단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
  - 5)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
- 나. 「농촌진흥법」 제2조제3호·제4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·교육훈련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
- 다. 농업인등의 농작물 생산·가공 등 영농활동에 대하여 농촌진 흥청,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한 상담과 현장 기술지원에 관 한 정보
- 라. 농촌진흥청, 지방농촌진흥기관, 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품종개량, 재배, 사육, 가공 등 농작물의 생산 및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정보
- 마.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
- 4. "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"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 를 전자적으로 수집·관리·연계 및 공동 활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 구축·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5. "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"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농촌진흥기 관의 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·가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 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농촌진흥청장은 「농촌진흥법」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 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하고,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

견을 들어야 한다.

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 표
- 2.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
- 3.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
- 4.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·활용
- 5.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・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
- 6.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 •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
- 7.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6조(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)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.
  - 1. 연구기관, 대학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법
  - 2.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 및 공동 활용하는 방법
  - 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
  - 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및 수집한 농업과학 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·변경등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제7조(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)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·변경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 랫폼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농업인등이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수집 · 관리되

- 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연구기관, 대학 등이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 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)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·관리·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,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농촌진흥청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업과학기 술정보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.
  - 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 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④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,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 랫폼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・활용 촉진)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

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·가공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- 1. 농업인·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 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
- 2.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
- 3.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
- 4.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·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0조(개인정보 보호)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, 이용, 제공, 보유, 관리 및 파기(이하 "취급"이라 한다)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.
- 제11조(기술보급·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)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, 대학, 연구기관,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·확산 지원단(이하 "기술보급확산지원단"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

- 2.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
- 3.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
- 4.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
- 5.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)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
  - 2.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
  - 3. 생산, 가공, 유통, 마케팅,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
  - 4.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·기술적 지원 을 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)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보급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할수 있다.
  -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생산·분석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운영의 평가 등)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.
 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
  - 2.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  -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수 있다.

- 제15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·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